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조 근거
마련〉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7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조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2025년 2월 3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음.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 월 평균 소득은 305만원으로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483만원의 63.3% 수준임. 이는 2017년 기준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장애인가구 월 평균 소득이 66.9%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5,445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

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조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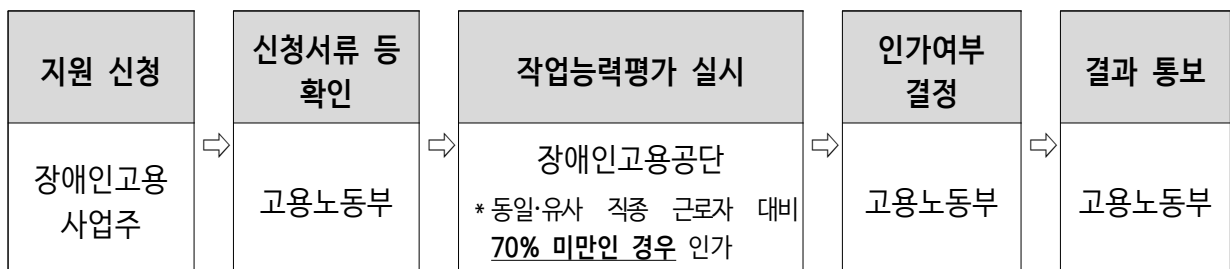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2조의2(저임금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 사업장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근로자와 동일·유사 직종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평가·비교하여,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결정함.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는 2024년 기준 10,277명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1.6% 수준)으로, 인가자의 대부분이 발달 장애인(88.8%)이며, 직업재활시설(96.6%)²⁾에서 근로하고 있음.

1)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현황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인가인원(명)	9,005	9,475	10,043	9,816	10,277
사업체(개소)	689	744	721	743	753

〈참고〉

‘23년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복지부): ‘22년 근로장애인 평균 시급 5,447원

‘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태조사(복지부): ‘21년 최저임금 미만자 평균시급 3,956원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5,445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³⁾

2022년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과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 제공을 권고한 바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3) 출처 :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법 개정」(2023.12.07.),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국문본 일부 발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710050100&bid=0056&act=view&list_no=376133)

근로 및 고용(제27조)

5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b)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많은 장애인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음

56.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8.5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b) 「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 대해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에 게도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까지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훈련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 내 생산능력이 떨어져 당장 임금 제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바, 훈련수당을 임금과 동일선상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훈련수당과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할 경우, 다른 시설⁵⁾의 훈련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 중증장애인 증가 등으로 지원금액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추가적인 신규지원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재도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고용노동부), 장애인연금 지급 및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우대 등(보건복지

5) 현재 장애인고용공단 직접훈련기관 37개소[직업능력개발원(6), 맞춤형훈련센터(2), 디지털훈련센터(10), 발달장애인훈련센터(19)] 및 지원훈련기관 67개소[공공훈련지원(22), 민간훈련(45)]에서 훈련 실시 중

부)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고, 개정안과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보전을 지원할 경우 분리 고용이 고착화되고, 일반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과 통합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25년도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실태조사를 통해 저임금 문제 해결 방안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재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임금보전 필요성에 공감하나, 재원은 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경기도는 개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임금 보조 시에는 직업재활시설 매출 및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 지원 적절성 및 각 시도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비율 규정(예 50%) 등 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539